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

2018. 4. 17

- 건의처 : 환경부장관
- 참 조 : 화학안전과장

화학물질 관리법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해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요건과 안전검사의 의무를 확대하였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를 통해 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에 따라 건축물과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신규 착공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달리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개보수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해당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외주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표면처리, 도금, 주조 등 뿌리산업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개보수 기간에는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료 후 납품처로부터 받아야 할 승인절차까지 포함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사실상 휴업상태와 다를 바가 없게 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를 통해 법 공포 전(2014년 12월 31일)에 착공한 취급시설에 있어서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산 품목 및 공정 변경 시장외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취급시설 전반을 새로 갖추어야 하는 상황임.

-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취급시설을 개보수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생산을 멈출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임. 화학물질 사용업 중 구매처와 납품처 사이에서 표면처리, 가공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의 생산이 멈출 경우 구매업체와 납품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러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의 준수를 위해 납품처 유지가 불투명한 위험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법의 적용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과 사용업에 일괄 적용하는데 있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과 사용업은 취급방법과 정도가 매우 다름. 사용업 중에서도 생산품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고 낮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배관에서부터 저장설비, 환기시설 등 전 부문에 동일한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됨.
예로 들어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의 경우 연간 100kg 이상이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반해, 일반 유독물질은 연간 240톤(일부 120톤) 이상 사용하면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사실 연간 100kg은 240톤에 비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더불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인화성물질 1g을 사용하건 1톤을 사용하던 방폭구조 전기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양에 상관없이 인화성 또는 산화성 물질을 취급할 경우 내화구조의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어 설비과다의 문제점으로 지적됨.

II. 건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법의 취지와 같이 공표 전(2014년 12월 31일)에 착공한 취급시설의 경우 생산품 변경으로 인한 장외영향평가 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취급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하인 경우는 영업허가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화학물질 제조업과 취급업을 따로 분류하고, 취급업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수량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도와 사고 영향력이 다르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8. 4. 17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